

#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2508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년 9월 28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, 각종 회계·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·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.  
(안 제3조)
- 나. 기금의 각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정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예탁·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.  
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  
(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)
- 마.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.(안 제15조)
- 바.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,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8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, 제43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

나. 예산조치 : 붙임 “비용추계서”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9. 1. ~ 2020. 9.21.) 결과 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통합기금의 설치)**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**제3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**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**제4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**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**제5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**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되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지방세 세입액이 결산서상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출

- 가.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- 나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우
- 다. 그 밖에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진 경우

2. 특별회계로의 전출

3.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6조(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통합기금을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이자)** ①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예탁·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·특별회계·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15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5.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
6.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사항
7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각 국·소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
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(委員)의 임기(任期)는 2년(二年)으로 하되 한 차례(一次)만 연임(連任)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(公務員)의 임기(任期)는 그 재임기간(在任期間)으로 하며 보궐위원(補選委員)의 임기(任期)는 전임위원(前任委員) 임기(任期)의 남은 기간(剩餘期間)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(委員)은 다음 각 호(各號)의 어느 하나(其一)에 해당하는 경우(場合)에는 안건(案件)의 심의(審議)·의결(議決)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(委員) 또는 그 배우자(配偶者)나 배우자(配偶者)였던 사람(人)이 해당 안건(案件)의 당사자(當事者)가 되거나 그 안건(案件)의 당사자(當事者)와 공동권리자(共同權利者) 또는 공동의무자(共同義務者)인 경우
2. 위원(委員)이 해당 안건(案件)의 당사자(當事者)와 친족(親屬)이거나 친족(親屬)이었던 경우
3. 위원(委員)이 해당 안건(案件)에 대하여 증언(證言), 진술(陳述), 자문(諮問), 연구(研究), 용역(傭役) 또는 감정(鑑定)을 한 경우
4. 위원(委員)이나 위원(委員)이 속한 법인(法人) 또는 단체(團體) 등이 해당 안건(案件)의 당사자(當事者)의 대리인(代理人)이거나 대리인(代理人)이었던 경우
5. 그 밖에 해당 안건(案件)의 당사자(當事者)와 직접적(直接)인 이해관계(利害關係)가 있다고 인정(認定)되는 경우

② 위원회(委員會)에서 심의(審議)하는 안건(案件)의 당사자(當事者)는 위원(委員)에게 제1항(第1項)에 따른 제척(除斥)사유(事由)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(審議)·의결(議決)을 기대(期待)하기 어려운 사정(情狀)이 있는 경우(場合)에는 위원회(委員會)에 기피(忌避) 신청(申請)을 할 수 있고, 위원회(委員會)는 의결(議決)로 기피(忌避) 여부를 결정(決定)한다. 이 경우(場合) 기피(忌避) 신청(申請)의 대상(對象)인 위원(委員)은 그 의결(議決)에 참여(參與)하지 못한다.

③ 위원(委員)이 제1항(第1項) 각 호(各號)에 따른 제척(除斥) 사유(事由)에 해당(對應)하는 경우(場合)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(案件)의 심의(審議)·의결(議決)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(구청長)은 위원(委員)이 다음 각 호(各號)의 어느 하나(其一)에 해당하는 경우(場合)에는 해당 위원(委員)을 해촉(解雇)할 수 있다.

1. 위원(委員) 스스로 사임(辭任)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(委員)이 사망(死亡), 질병(疾病), 그 밖의 사유(事由)로 직무(職務)를 수행( 수행)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(委員)이 장기불참(長期不參), 품위손상(品位 손상) 등으로 직무수행(職務 수행)이 부적당(不適當)하다고 판단(判斷)되는 경우
4. 위원(委員)이 위원회(委員會) 활동(活動) 중에 비리(非禮) 등 부패(腐敗)에 연루(連累)되었거나 사회통념상(社會通念上) 해촉(解雇)될 만한 사유(事由)가 발생하는 경우

5.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**제13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4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5조(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의 발생요인

- 일반회계와 각각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비비 한도 초과 예산(회계별 예산 총액의 1% 이내)을 기금으로 예탁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으로 함.
- 기금의 “통합 계정”은 회계·기금 간 내부거래 예산임.
- 기금의 “재정안정화 계정”의 재원은 지방세 결산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의 130%를 초과하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연례적인 비용을 산출할 수 없어 계상하지 않음.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                      | 2021년             | 2022년             | 2023년             | 2024년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세출  | <b>계</b>              | <b>23,214,083</b> | <b>23,576,223</b> | <b>23,944,012</b> | <b>24,317,539</b> |
|     |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| 10,145,544        | 10,303,814        | 10,464,554        | 10,627,801        |
|     |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| 158,270           | 160,740           | 163,247           | 165,794           |
|     |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    | 12,711,962        | 12,910,269        | 13,111,669        | 13,316,211        |
|     |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    | 198,307           | 201,400           | 204,542           | 207,733           |
|     | <b>계</b>              | <b>23,214,083</b> | <b>23,576,223</b> | <b>23,944,012</b> | <b>24,317,539</b> |
| 세입  |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수금       | 10,145,544        | 10,303,814        | 10,464,554        | 10,627,801        |
|     |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  | 158,270           | 160,740           | 163,247           | 165,794           |
|     |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          | 12,711,962        | 12,910,269        | 13,111,669        | 13,316,211        |
|     |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      | 198,307           | 201,400           | 204,542           | 207,733           |
|     | <b>계</b>              | <b>23,214,083</b> | <b>23,576,223</b> | <b>23,944,012</b> | <b>24,317,539</b> |
|     | <b>계</b>              | <b>23,214,083</b> | <b>23,576,223</b> | <b>23,944,012</b> | <b>24,317,539</b> |

#### 4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각 특별회계별 예수금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회계별 예산 총액의 1%를 제외한 예비비 금액으로 계상
- 이자수입은 2020년 8월 현재 구금고 보통예금 이자율(1.56%)로 계상

#### 5. 자원조달 방안

- 부문별 자원부담 계획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2021년             | 2022년             | 2023년             | 2024년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b>계</b>             | <b>23,214,083</b> | <b>23,576,223</b> | <b>23,944,012</b> | <b>24,317,539</b> |
|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수금      | 10,145,544        | 10,303,814        | 10,464,554        | 10,627,801        |
|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 | 158,270           | 160,740           | 163,247           | 165,794           |
|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         | 12,711,962        | 12,910,269        | 13,111,669        | 13,316,211        |
|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     | 198,307           | 201,400           | 204,542           | 207,733           |

#### 6. 작성자

| 부서명   | 직위 | 성 명 | 연락처       |
|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|
| 기획예산과 | 과장 | 김병길 | 2620-3175 |

# 【관계 법령】

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

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

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기금운용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